



3월 보건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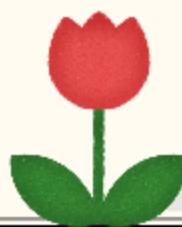
2024년 3월호

발행일 24.3.11.

발행처

전주예술중학교

보건실



전주예술중 학생들의
입학과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실은 우리 학교 전체 어린이들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안정(휴식) 등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학교 응급 관리 절차 안내

「학교교육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 응급관리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서 응급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와 동행하여 인근 병원으로 우선 이송합니다.
움직이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구조대에 연락하며, 교사가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합니다.

우리 학교는 금연 구역!

2015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학교는 물론 버스정류장,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자담배 또한 과태료

가 적용됩니다.



보건실 이용 안내

보건실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는 고민이 있거나 건강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고 싶을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보건실 위치 : 1층 교무실 옆

-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 쉬는 시간을 이용합니다.
 - 부축이 필요하거나 상황 설명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인 학생이 혼자 이용하도록 합니다.
 - 키, 몸무게, 비만도가 궁금한 학생은 보건실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 상처는 깨끗이 씻고 옵니다.
 - 허락 없이 약을 먹거나 바르지 않습니다.
 - 침상 안정은 보건 선생님의 판단 아래
 - 담임선생님과 교과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1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시간으로 증상 호전이 없으면 건강을 위한 병원 진료 등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법정 감염병 이환 시 등교중지 안내

1. 등교중지 근거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등교중지

- ① 가정에서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② 병원에서 확인받은 “**병명, 전염여부, 등교중지기간**”이 기록된 소견서(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를 완치 후 등교 시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 학교·학원 등교중지함) 예: 인플루엔자, 수두, 수족구병, 유행

성 이하선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병명	5 초기증상	등교중지 기간
수두	2주과 동시에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코로나 19	인후통, 기침, 발열	전염최소화를 위해 5일간 등교중지
인플루엔자(독감)	고열, 관절통, 호흡기계통에 이상이 옵	5일간, 타이플루 복용을 모두 완료한 후,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등교(의사소견서 필요)

봄철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는 주로 3~4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확인: APP: 에어코리아 다운로드



1
2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KF 94)

야외활동은 자제, 활동량 줄이기

물과 비타민C가 충분한 음식 섭취하기

4 오염 물질이 유입되므로 창문
되도록 열지 않기(환기는 10분간)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특히 유의!
(천식, 알레르기, 심혈관질환 등)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우리 학교 성고충 상담 창구는 보건실(본관 1층)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02-735-8994

성희롱·성폭력 및 남녀 차별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성고충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자 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
(24시)

성폭력, 성희롱이란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여성긴급전화
전북 여성·학교폭력피해자 해바라기 아동자
원센터

(063-246-1375)

사람이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낀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이럴 때
에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성고충 상담창구(보건실)

본교에서는 학생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성고충 상담창구(보건실)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